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연장〉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82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등으로 소집통지를 발송(상장회사가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sup>1)</sup>).

○ 이러한 2주 간의 통지기간은 발송일과 총회일 사이에 적어도 14일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경우에도 초일은 산입되지 않음.<sup>2)</sup>

○ 또한, 해당 규정은 주주의 참석권 보장 등 주주의 이익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의로 단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개정안은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주주총회일의 3주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려는 취지

---

1)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이해됨(안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u>2주</u>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br>-----<br><u>3주</u> -----<br>-----<br>----- . -----<br>-----<br>-----<br>-----<br>-----<br>-----<br>----- .       |
| ② ~ ⑦ (생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u>2주</u>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br>-----<br>-----<br>-----<br>-----<br>-----<br><u>3주</u> -----<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br>-----<br>--. |
| ② · ③ (생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①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주주가 총회 안건을 파악하고, 의결권 위임 및 찬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재 부여되는 2주 간의 통지기간은 짧은 지적이 있는 점<sup>3)</sup>과 ② 영국<sup>4)</sup>, 독일<sup>5)</sup> 등의 해외 입법례<sup>6)</sup>가 상장회사의 통지기간을 최소 3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통지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 DR)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음. DR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 회사의 신규 발행주식 또는 당해 주식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의미함. DR을 이용한 해외투자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원주보관기관에 보낸 소집통지가 DR예탁기관, 외국중앙예탁기관, DR소유자보관기관을 거쳐서 도달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시는 다시 거꾸로 원주보관기관에까지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14일 사이에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임.

4) Companies Act 2006 (UK Public General Acts 2006 c. 46)

§307(2) A general meeting of a public company (other than an adjourned meeting) must be called by notice of—

(a) in the case of an annual general meeting, at least 21 days, and

(b) in any other case, at least 14 days.

5) 「독일 주식법」(법무부, “독일 주식법”, 2025.)

제123조(소집기간, 총회출석을 위한 신청, 증명서) ① 주주총회는 총회일의 적어도 30일 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소집일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6)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와 동일하게 2주로 정하고 있음.

「일본 회사법」(법무부, “일본 회사법”, 2025.)

제299조(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를 제외하고 공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주일(그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회사로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전까지 주주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안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sup>7)</sup>으로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취지,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실무상 운영의 가능 여부나 실현을 위한 비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

○ 다만, 정기주주총회<sup>8)</sup> 이외에 소집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급박한 안전을 적시에 의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3주보다 단기로 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055 |

7)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 전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출석의 의미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개정안과 같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

8) 이 법은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83조(원수, 임기) 등에서 회계연도 등 일정한 주기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규율하고 있으나, 처리 필요 안전이 있을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